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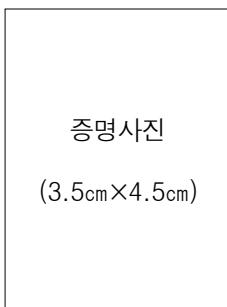
# 건설기술경력증

수탁기관

### 유의사항

1.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,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
2.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(작성란의 부족 등) 또는 재발급사유(훼손·분실 등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3.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4.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
5.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6.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건설기술경력증



발급번호

○○○○

성명

○○○

발급일

○○○○

생년월일

○○○○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 
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.

수탁기관의 장 인

조회일자: 년 월 일(모바일에 한함)



■ 국가기술자격		발급번호:	성명 :
종목 및 등급	등록번호	합격일	

■ 학력			
졸업일	학교명	학과(전공)	학위



■ 제재사항		발급번호:	성명 :
제재일	종류 및 제재기간	근거	제재기관

제재일	종류 및 제재기간	근거	제재기관